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14
----------	-------

제출년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 반영

주요내용

-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조문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
(안 제7조)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광역과 시·군 이동지원센터 기능 규정
(안 제8조)
-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공공
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기관·단체로 정함(안 제9조)
-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이동
지원센터 운영사항(요금, 이용대상자 등)을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3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개정조례안 :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붙임 4】

사전예고(결과) : 【붙임 5】

입법예고 : 2023. 9. 15. ~ 2023. 10. 5. (21일간)

기타 참고사항

현행조례 : 【붙임 6】

방침결정문 : 【붙임 7】

【붙임 1】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2조”로 한다.

제3조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본문 중 “법령”을 “다른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중무휴”를 “1년 365일, 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을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으로 한다.

제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관리
2.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차량 관리
3. 이용대상자 심사 및 등록
7.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확보 및 접수, 배정, 운영·관리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자격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게”를 “법 시행령 제14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 이란 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2조제1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 제1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제11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 를 “휠체어”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과 이용요금은 제8조와 제9조 및 제10조,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를 “운영은 제8조와 제9조 및 제10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용요금은 시장이 정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이용자의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제한요건을 정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자

2. 임산부

3.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제11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이용대상자 중 대부분도 지역 교통약자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안산시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항 개

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였던 장애인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로 본다.

소관 실·과		철도교통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철도교통과장 이 익 환
	담당·팀장 직위·성명	교통정책팀장 백 대 현
	담당자 성명·전화	김 경 미 (행정 2979)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 ----- ----- <u>제2조</u>-----.</p>
<p>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u>다른 조례와의 관계</u>) ----- ----- <u>다른 조례</u>----- ----- -----.</p>
<p>제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이동지원센터는 <u>연중무휴</u>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이용이 적은 날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p> <p>③ <u>이동지원센터의 보유 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u></p> <p>④ (생 략)</p>	<p>제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 ----- ----- -- <u>설치해야 한다.</u> ② ----- <u>1년 365일, 1일</u>----- ----- ----- -----.</p> <p>③ <u>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p>	<p>제8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 ----- -.</p> <p>1. <u>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u></p>

2. 특별교통수단인 차량 운행

3.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4.~ 6. (생 략)

<신 설>

7. (생 략)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자격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②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를 결정한다.

③ 위탁운영자의 심사항목에는 공신력 및 전문성,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사업 운영실적,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이동지원센터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생 략)

<신 설>

2.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차량 관리

3. 이용대상자 심사 및 등록

4.~ 6. (현행과 같음)

7.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확보 및 접수, 배정, 운영·관리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 법 시행령 제14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임산부 또는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은 대중교통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②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 이란 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

〈삭제〉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제13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 및 이용대상자)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와 해당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또는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관리·운영과 이용요금은 제8조와 제9조 및 제10조,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 및 이용대상자) ① --- 휠체어-----

-----.
② -----운영은 제8조와 제9조 및 제10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용요금은 시장이 정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이용자의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제한요건을 정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자

2. 임산부

3.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 설>

⑤ 제11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이용대상자 중 대부도 지역 교통약자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안산시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9-314
------------	-------

제안년월일 : 2023년 12월 1일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수정이유

-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이용 대상자 중 대부도 지역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관내로 한정된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편의를 제공하자 함.
- 기존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으로 한정 되어있는 경과조치 조항을 교통약자로 수정하여 개정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수정함.

주요골자

- 대부도 지역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단서 삭제(안 제13조의2제5항)
- 장애인으로 한정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을 교통약자로 수정(안 부칙 제2조)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의2제5항 후단을 삭제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장애인은” 을 “교통약자는” 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3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 및 이용대상자) ① 시장은 제11조 제1항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와 해당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또는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관리·운영과 이용요금은 제8조와 제9조 및 제10조,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3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 및 이용대상자) ① --- 휠체어--- ----- ----- ----- ----- ----- ----- ----- -----. ② ----- ---운영은 제8조와 제9조 및 제10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용요금은 시장이 정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p>	<p>제13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 및 이용대상자) ① ~ ④ (개정안과 같음)</p>
<p><신 설></p>	<p><u>③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이용자의 이용목적 등을 고</u></p>	

려하여 이용에 대한 우선
순위 및 제한요건을 정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
서를 제출한 자

2. 임산부

3. 제1호부터 제2호에 해
당하는 교통약자를 동
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
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
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
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제11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이용대상자 중
대부도 지역 교통약자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이
용할 수 있다. 다만 안산
시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제2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에 관한

⑤

-----.
<후단 삽
제>

부칙

제2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에 관한

<신 설>

<신 설>

<신 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였던 <u>장애인</u> 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로 본다.	경과조치) ----- ----- ----- ----- <u>교통약</u> <u>자는</u> ----- ----- -----.
--	---